

현금 보조 추가 수당 (Korean)

다른 사람이 귀하의 예산에 추가되거나, 특정한 특별 필요 사항을 만족할 경우 귀하는 추가 현금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이 귀하에게 해당되십니까?

추가 가족 구성원	근무 활동 관련 지원 서비스
<p>출산을 하시거나, 자녀 또는 성인이 최근에 귀하의 집으로 입주한 경우 귀하는 다음의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렌트비, 기타 필요 사항에 대한 추가 현금 보조 • 추가적인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혜택 	<p>저희로부터 승인을 받은 근무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 서비스에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경우, 승인 한도 내의 보육비 수당 • 필요한 대중 교통 • 노숙 또는 최근의 화재, 적절한 의복 부재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한 상태에서 구직 중에 있는 가입자를 위한 의복 • 해당 물품에 대한 필요성을 명시한 서류를 제출한 상태에서 승인 한도 내의 활동/참여 관련 라이선스 작업, 유니폼 또는 내구재 비용 <p>필요한 지원 서비스는 근무 활동을 시작할 때 제공됩니다. 필요 사항이 변동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을 경우, 추가 수당을 직업 센터에 신청해 주십시오.</p> <p>WEP 기관 및/또는 관련 업체들은 필요한 안전 장비 또는 직업 관련 의복을 가입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p> <p>위기 중재,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생활 및 육아 기술, 자립할 수 없는 성인을 위한 데이 케어 관련 카운슬링 등 기타 서비스 및 지원도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복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추가적 식품 비용 필요</p> <p>오븐, 가스레인지,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거나, 조리 시설이 없는 집에 거주하고 있거나, 귀하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할 수 없을 경우 귀하는 다음에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점 수당 또는 • 가정 배달 식사 수당 	<p>임신</p>
<p>주거 및 쉼터 관련 필요 사항</p> <p>퇴거를 방지하기 위한 체납된 렌트비</p> <p>포클로저(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체납된 모기지 및/또는 재산세</p> <p>유틸리티 서비스 유지 또는 복구 비용</p> <p>난방 비용이 렌트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2주별 난방 연료 수당</p> <p>연료 비용을 위한 추가 수당</p> <p>귀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또는 소득 창출을 위해 집이 반드시 수리되어야 할 경우에 집 수리 비용</p> <p>난방 장치, 가스 레인지 또는 냉장고와 같이 귀하가 소유한 필수 가계 물품의 수리 또는 일부의 경우 교체 비용</p> <p>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수 가구 및 물품을 사는 데 필요한 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이나 모텔에서 가구가 갖추어지지 않은 집으로 이사함 • 혼자 생활하고 기관으로부터 퇴소하였으며 가구가 갖추어진 거주지를 찾을 수 없음 • 가족 구성원이 위탁 아동 시설 또는 기관으로부터 퇴소한 후 집으로 돌아옴 • 건강 및 안전상 가구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집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p>반드시 이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비용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비용 • 보증금/합의금 • 브로커 비용/바우처 • 가구 및 개인 소지품 보관 	<p>출산 예정일이 명시되어 있고 귀하가 최소 임신 4개월이라는 의학적 서류를 제출할 경우, 1개월당 추가 \$50를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p>
<p>재난적 손실</p>	<p>최근에 화재, 홍수 또는 기타 재해로 인해 가구나 의복을 유실한 경우 이러한 물품을 대체할 대체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p>
<p>캠프 비용</p>	<p>재정이 다른 출처로부터 획득될 수 없을 경우 귀하는 자녀를 위한 캠프 비용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p>
<p>장례 수당</p>	<p>묘소 부지, 화장 비용 등을 포함하지 않은 장례 비용이 \$1,70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장례 청구부(Burial Claims Unit)에 신청해 주십시오.</p> <p>주소: 25 Chapel Street Room 606 Brooklyn, NY 11201</p> <p>최대 \$900까지 장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p>

추가 수당 요청 방법

다른 사람을 예산에 추가하거나 특별 필요 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에는 센터 내방, 전화, 우편, 팩스와 같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 혜택을 받으려면 다른 지정 사무소에 연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사를 만나기 위해 직업 센터로 갈 경우 당일에 복지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담당 복지사가 요청서 작성을 도와 드립니다. 해당 복지사를 만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경우 리셉셔니스트로부터 요청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식을 작성하신 후 리셉셔니스트에게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시면 리셉셔니스트가 날짜가 명시된 사본을 드립니다. 또는 양식을 집으로 가져가셔서 작성하신 후 우편으로 복지사에게 송달하셔도 됩니다. 내방하여 직접 요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복지사가 귀하에게 소지해야 할 필요 증빙 서류 목록을 알려 드립니다.

전화나 우편으로 요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복지사가 이미 작성된 요청서 사본과 함께 요청에 필요한 증빙 서류 목록을 보내드립니다.

서류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복지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사가 도와드립니다. 서류를 획득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실 경우, 복지사에게 서류 제출 마감 기한 전에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18세 이상의 성인을 귀하의 예산에 추가하고 싶으신 경우, 해당인이 직접 직업 센터에 내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다른 사람을 귀하의 예산에 추가할 수 있는지와 특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복지사가 확인해 드립니다. 복지사는 결정 사항이 설명되어 있는 통지문을 보내드립니다. 귀하의 요청이 거절될 경우 통지문에 거절 사유가 명시됩니다. 복지사가 긴급 상황을 해결할 수 있으려면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귀하가 결정 사항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 재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착오가 발생한 경우 수정해 드립니다. 귀하는 회의(컨퍼런스)를 요청하고 주정부 심리 사무관이 진행하는 주정부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컨퍼런스 (비공식 회의):** 결정 사항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시거나 결정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전화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센터에 전화하여 리셉셔니스트에게 기관 컨퍼런스를 갖고 싶다고 말씀하십시오. 센터의 대표 전화번호를 모르실 경우 **HRA Information**으로 전화하여 올바른 연락처를 확인하십시오. **HRA Information** 전화 번호는 **(877) 472-8411**. 경우에 따라 컨퍼런스는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른 수단입니다. 공청회를 요청하셨다 하더라도 이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공청회:** 서신, 전화, 팩스, 내방, 인터넷을 통해 주정부 공청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신: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NYS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로 서신을 우편 발송해 주십시오. 주소: **P.O. Box 1930, Albany, NY 12201-1930**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전화: + (800) 342-3334

팩스: 팩스번호: (518) 473-6735

내방: 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14 Boerum Place, Brooklyn, NY 11201.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서 온라인 요청서를 작성하십시오. <http://www.otda.ny.gov/oah/forms.asp>